

육계 운송중 감량 일반 사육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취재/이유혁 기자

지난 '96년의 육계업은 호황보다는 불황이 길었던 해로 분석이 되었다.

불황이 길었던 탓에 대부분의 육계농가들은 출하에 어두움도 많았던게 사실이다.

과거 출하시 감량 문제로 마찰이 심했던 점을 감안하여 다시 최근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출하시 감량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농가와 유통업자 또는 도계장간에 의견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분석하였다.

1. 감량 현황

(1) 운송중 사계에 대한 감량

국내의 계열업체와 농가가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지만 계열업체에서 일반구매를 할 경우는 매우 먼 곳에서 닭을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송중에 사계의 발생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사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A계열회사의 경우는 육계를 수집할 때 근거리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 작업을 하고 있어 폐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계열업체는 계약사육 농가에게 운송중 폐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지만 일부 업체는 책임을 닦 운송자나 농가에 떠넘기고 있으며, 상인들의 경우 폐사가 날 때에는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폐사가 많을 때는 계약농가와 협의를 해서 감량을 하고 있다.

(2) 병계 감량

병이 많이 발생한 농가는 조기 출하를 하고 있는데 만약 병계가 도계라인에 걸리면 도계과정중에 병계를 빼내어 렌더링 시켜버리고 있다.



이렇게 병계가 많이 발생할 때 상인들이나 일부업체에서는 감량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에서는 이것을 반송을 하고 도계비를 받지도 못하는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업체는 농가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B식품의 경우에는 심할 때는 30~40%가 병계로 나타나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감량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3)파계 감량

농장에서 상차를 하거나 도계장으로 가서 하차를 할 때 그리고 도계기에 닭을 걸때에 닭이 상처를 입거나 다리나

날개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파계가 발생돼도 모든 계열업체들이 파계도 실중량에 포함을 해서 농가에 사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이것에 대한 감량없이 계열업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파계된 것도 감량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파계가된 계육은 부분육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지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은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다.

(4)비 감량

닭 운반중에 소나기가 와서

계근소에서 계근을 할 때 중량이 많이 늘어나는 일이 있다.

이것을 계열업체에서는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계근한 양이 심하게 차이가 날 때는 농가와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감량을 하고 있다.

상인들도 계열업체와 마찬가지로 농가와 상의를 해서 감량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30~100kg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감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에 대한 감량조항이 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거리 감량

사계에 대한 감량에서 말한 것과 같이 원거리 작업을 할 경우 폐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운송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거리에 대한 감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결과는 그와 반대로 감량을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사의 신계약서를 보면 거리에 대한 감량이 나타나 있고, C사는 계약농가가 근거리에 있어 거리 감량은

없으나 상인이나 유통을 통하여 구매를 할 때는 감량을 하고 있다.

(6) 등외품에 대한 감량

삼계를 취급하는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게는 도체중이 900~1200g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등외품이라 하여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등외품으로 해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도 농가에 피해를 주는 감량을 하지 않고 있다.

(7) 삼계용에서의 감량

삼계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일반업체의 무게단위(kg)와는 달리 수수로 계산을 하고 있고, 무게의 범위는 생체 700~800g으로 이 범위를 벗어나면 반품되어 농가로 되돌아온다. 어떤 경우에는 5천수를 출하하였는데 2천수가 반품된 사례도 있다.

이렇게 2천수가 되돌아 오게되면 되돌아온 것에 대한 사육비나 기타 보조비도 받지 못하고 약추가 되어서 되돌아와 생산성에도 큰 문제가 되

고 있으며, 판로가 없어 문제 가 되는데 이것도 감량을 농가에 그대로 떠넘기는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2. 문제점

앞에 열거한 7가지에 대한 문제중 계열업체에서는 유통이나 상인을 통하여 구매를 할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계열업체에서는 계약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일반사육을 해서 유통을 경유하는 농가에게는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감량에 대한 모든 부분이 계약서상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감량에 대한 문제

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농가와 업체가 계약에 명시된 것이 없이 협의하에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약서상에 아무런 표기가 없을 시에는 모든 불이익이 농가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원초적인 것이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지만 농가에서나 계열업체에서는 이것을 아직까지는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더 큰 문제이다.

3. 해결방법

(1) 농가

농가는 앞에 열거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



나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 가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계약 서에 서문화 한다거나 일반사 육시 출하할 때 분명하게 계 래조건에 명시하는 조처가 필 요하다. 그리고 불평등조항이 많은 업체나 유통 그리고 상 인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 이 필수적이다.

항상 좋은 병아리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적정수준의 양 을 생산해 나가야 하며, 균일 도를 맞추는 일도 필요하다.

(2) 계열주체

계열주체는 계약농가는 보

호하면서 다른 일반농가를 보 호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가도 사육을 해서 유 통이나 상인을 통해서 출하를 하지만 결과는 일종의 계약사 육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계약농가가 아니지만 이들도 보호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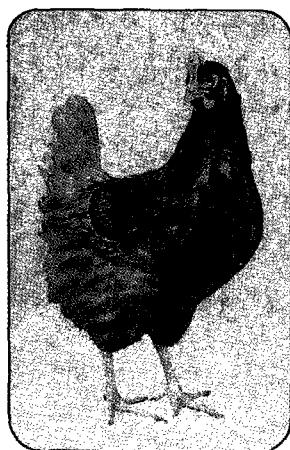
그래야 물량을 맞추려고 닭 을 사들일 때 쉽게 구매가 이 루어져 상호 보완 관계가 성 립될 수 있을 것이다.

유통상은 감량을 많이 하는 업체를 농가에 소개를 시켜주 지 말아야 하며, 대금결제를 많이 지연하는 업체도 마찬가 지다. 항상 농가와 공존 공생 한다는 생각이 필요할 것이다.

상인들이 감량을 심하게 한 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심을 받지 않게 정확하게 해서 농 가가 의욕을 가지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신 빙성있는 상행위를 지키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기제

(3) 유통과 상인

노 계 유 통 전 문



노계유통에 일익을 담당할
대림유통이 탄생했습니다.
양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대 림 유 통

대 표 변 광 일

충남 천안시 다가동 373-3 (삼화B/D302호)

Tel: (0417)574-4600-1

FAX: (0417)572-5949